##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84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양부남·장종태·조계원

신정훈 • 민형배 • 채현일

전진숙 · 김현정 · 이성윤

이상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가 가능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할 수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등).

법률 제 호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중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을 "연계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작 성·배포하는 행위

제11조제2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제4조(직무) ①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1			
의 수집 · 작성 · 배포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라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				
와 <u>연계되거나 연계가 의</u>	<u>연계된</u>			
<u>심되는</u> 안보침해행위에 관				
한 정보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생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	2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u>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u>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u>7.</u>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	L통신'	망을 (	이용한	제
1호부터	제5호	까지이	네 해딩	하
는 행위				

-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 ⑥ (생 략)

<u>মা6ছ</u>
<u>8.</u>
<u>제7호</u>
③ ~ ⑥ (현행과 같음)